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인증 학교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 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5. 30.
- (3) 회 부 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음.

이에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하지만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전문대학의 졸업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하였을 당시, 해당 학교가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나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 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증기관의 예비인증(이하 “평가인증기관의 예비인증”이라 한다)----- ----- ----- -----.
제7조(간호사 면허)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제7조(간호사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증 또는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 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본다.	<u>평가인증기관의 예비인증</u>----- ----- ----- -----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5조 및 제7조¹⁾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기구²⁾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의사·치과 의사·한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제7조제1항), 입학 당시 인증 학교였다면 졸업 시 인증이 만료³⁾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1)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2) 의사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치과의사 :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의사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2년부터 6년까지 다양함.

- 이러한 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려는 취지로, 2012년 2월 개정된 해당 조항이 2017년 2월부터 시행됨⁴⁾에 따라 2018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있음.

□ 그런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⁵⁾, 2018년 이후 교육과정이 신설되는 경우 입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교육과정 신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평가·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제1항⁶⁾(2023. 10. 10. 개정 전)에서 대학 등이 해당 교육과정의 “운명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4)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2012년 2월 법 개정 당시 적용례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현행법 제5조제3항 또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보건복지부 해석).

6) 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6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평가인증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평가·인증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에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임.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3년 10월 10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학 등의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평가인증기관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의료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기 9개월에서 1년 전까지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하도록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입학 당시 예비인증된 학교였다면 이후 해당 학교가 인증을 못 받았더라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가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동 법률안은 인증과 구별되는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있고, 예비 인증을 할 때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규정할 뿐 평가·인증 기준·방법·효력 등에 있어서 인증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음.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18호) 조문대비표

– 8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신중검토)

□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받은 평가·인증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에 해당하므로, 교육과정 신설대학에 대한 ‘예비인증’을 별도로 구분하여 법에 명시하여야 할 실익이 낮다고 판단됨.

□ 또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발의안)」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적절한 평가·인증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해 부실한 인증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의료인력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예비인증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부(신중검토)

□ ‘예비인증’이라는 새로운 평가·인증 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증’과 ‘예비인증’ 구분의 모호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반대), 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간호교육평가원(신중검토)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23.10.10.)으로 학과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해당 대통령령 제6조에 따라 인증의 방법·절차·유형 등은 인정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정기관은 신설대학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 인정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유형⁸⁾ 중 하나인 '예비인증'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혼란 발생 가능함.

□ 의학은 객관적 검증과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교육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동 개정안은 의학평가위원회의 인증 없이 '예비인증만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으로, 부실 교육에 따른 학생의 피해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임.

4) 한국의학교육평가원(신중검토)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의 대통령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구의 '인증'은 해당 인정기관이 정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정기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인증유형 중 특별히 '예비인

8)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유형: (기존대학) 인증(2년, 4년, 6년), (신설대학) 예비인증, 임시인증

증'만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신설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상위법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 11조의2 제2항의 일부개정(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학교”로 개정)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494